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57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 박희승 · 민병덕 · 김정호

윤준병 · 김준혁 · 서영교

정준호 • 박상혁 • 안호영

강유정 • 전진숙 • 김한규

소병훈 • 황명선 • 최기상

김문수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난립 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한하여 임차를 통한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타인의 사유지를 임차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추어 시설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시설의 빈번한 설치·폐업·이전 또는 소유주 변경 등으로 입소 노인에 대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노인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

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를 "세부 기준,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방식·절차 등에"로 한다.

-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1.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
	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
	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
	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
	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u> <신 설></u>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
	다. 다만,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
	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
	어 있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에 한한다.
	1.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
	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

- ③ (생 략)
-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u>기준과</u>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 료복지시설 또는 「노인 일자 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

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사용
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
<u>우</u>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
치하는 경우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⑥</u>
세부 기
준,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방식
<u>• 절차 등에</u>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 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3조제4항, <u>제35조제4항</u>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제6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 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 5. (생 략)

② ~ ④ (생 략)

•
1 레인크레스팅
1 <u>제35조제6항</u>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